2000. 12. 23(土)
제66회제2차정례회제7차본회의

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總 務 社 會 委 員 會

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2. 16 제 천 시 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2. 16

다. 상 정 일 자 : 2000. 12. 19(제66회제2차정례회총무사회위제4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 지선대)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01. 1. 1부터 시행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수용하는 한편, 2000. 12. 31로 만료되는 제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적용하거나 세제상의 확대적용 또는 체계나 일부 용어의 수정 등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삭제

• 조례 제3조(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)의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, 종토세,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삭제(대신 지방세법에 반영)

○ 신설

• 조례 제25조(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)에 동 지구내 벤처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, 종토세를 5년간 면제

• 조례 제26조(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)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

○ 개정

• 조례 제10조(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)제1항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통합되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부분을 삭제 및 조례 제11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에 전용면적 85㎡에 대하여 경감하던 세율을 60㎡이하로 축소

• 제16조(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)제2항에 도시계획시설로 10년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, 종토세 50%를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등 사권제한에 따른 세제상 혜택 확대

• 제23조(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)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2003. 12. 31까지 2년 연장하여 경감 등

• 기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,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는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차의 범위에 규정하여 감면토록 하는 한편 사회교육법은 평생교육법 등 개별법령에서 개정된 용어의 정리 등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태훈)

○ 법규적검토

• 조례 제3조(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)에서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270조제4항에 규정 되었으므로 타당하고

• 조례 제25조에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에서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하는 규정 신설은 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함(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,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)

• 또한 조례 제26조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업소세 면제규정 신설은 또한 위 근거와 같음.

• 한편 조례 제10조에서의 일부 감면규정의 삭제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통합됨에 따른 것이며

• 제11조 감면기준 면적을 축소하는 것은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추려는 개정사항임.

• 제16조의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근거 또한 법 제7조 및 법 제9조의 규정에서 찾을수 있고

• 제23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시 세제혜택이나 유공자, 장애인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등이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 할 것임.

• 아울러 동 조례는 2000. 11. 21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·도로, 2000. 11. 25 충청북도에서는 각 시·군으로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9조에 정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의회의결을 구하라는 지시 내용이 있었고

• 2000. 12. 8 입법예고를 거친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었고, 2000. 12. 16 제천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절차적 요소를 이행하였으므로 형식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.

○ **행정적 검토**

•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수용하면서 감면 조항의 확대, 체계수립 등 전면 개정을 도모함에 있어 표준안의 내용과 상치되는 바가 없고 체계나 자구·용어 수정 등 조례 입법상 형식적 요건에 미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"없 음"

5. 토론요지

"없 음"

6. 심사결과

"원안가결"

7. 심사보고 불임서류

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부. 끝.